

코퍼스 연구를 통해 살펴본 법령 번역 텍스트의 언어적 특성: 수동태 구문을 중심으로

이 지 은 · 최 효 은
(이화여대)

1. 서론

법률번역은 규범에 지배받는 텍스트 생산 행위이자 상이한 언어 및 법체계 간 법률커뮤니케이션 행위이다(Cao 2014: 422). 법률번역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우수한 이중언어능력 및 언어전환 능력 외에도 해당 법률제도에 대한 전문지식과 텍스트 유형 및 기능,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목적을 고려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Šarčević 2012: 3). 여기에는 법언어(법의 언어, 법률언어)의 특징과 기능에 대한 지식이 포함된다. 본고는 법률번역 중에서도 법령 번역과 관련된 법언어의 특성을 다룬다. 언어는 법률개념과 제도를 담는 그릇으로, 법언어는 특정한 법체계의 일부를 이룬다. 법언어는 어휘, 용어, 통사적, 텍스트적 특성이 있는 각국 고유의 언어 규범과 형태통사(morphosyntax) 및 의미론적, 그리고 화용적 특징이 있다(Cao 2007: 18; Mattila 2006: 3; Scott 2012: 34). 주로

영어 중심으로 진행된 연구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법언어의 특징으로 고어투, 격식성, 비밀상적이고 난해함(difficult), 기술용어(전문용어), 명사화, 길고 복잡한 문장, 장황하고 중복적인 표현, 조동사의 빈번한 사용, 이중부정문, 1인칭과 2인칭을 기피하는 비인칭적인 특징 등이 꼽힌다(Danet 1980; Morrison 1989; Tiersma 1999). 법언어는 통사적으로 주된 문장성분의 구조와 배열(arrangement)이 독특하며, 문장의 길이와 복잡성, 병렬(parataxis) 또는 종속(hypotaxis)과 같은 절의 구성, 수동태 선호 경향, 동사의 명사형, 결속장치(cohesive device) 지양과 같은 특성이 있다(Hiltunen 2012). 구, 절, 문장으로 언어가 사용되는 방식은 법률텍스트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법체계마다 특징적인 법언어가 존재한다.

한국 법언어의 경우, 일반적인 한국어 담화 관습이 법률텍스트에도 반영되어 조사생략, 주어나 목적어의 부재, 문장성분 생략 등이 법률텍스트 문장의 의미 전달을 방해하며, 난해한 어휘, 기형적 장문, 명사형 어미의 과도한 사용, 문장구조의 불완전성, 문장성분 간 호응의 불일치, 수식-피수식 구조의 모호성이 존재한다(장소원 2009). 이러한 법언어의 특성은 의미 해석 및 번역에 불가피하게 영향을 미친다. 일례로, 법률텍스트에서 주어가 생략되었거나 명시적이지 않는 경우는 상당히 많다. 예를 들어 헌법 제109조의 전반부인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를 보면 조문의 주어는 생략되어 있고, 의미상 목적어인 ‘재판의 심리와 판결’이 주제로 문두에 있다. 이 문장을 영어로 번역할 때 생략된 주어인 법원이나 사법부를 복원하여 능동태로 번역하느냐, 수동태로 번역하느냐는 번역자가 선택해야 한다. 때로는 의미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로 주어를 복원해내기 어려운 법조문도 존재한다(구명철 2018). 아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은 난해한 어휘와 기형적 장문의 특징이 있다.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본다.

문장의 길이가 너무 길어서 이해하기 어렵고, 네 번이나 나오는 ‘보증금 중 일정액’의 의미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마지막 부분을 읽어야 알 수 있다(김문오

2001: 35). 이렇게 길고 복잡한 법조문의 내용과 스타일을 고려하여 번역하기란 여간 어렵지 않다.

본고는 법률텍스트 중에서도 법조문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 법령(ST, 75,336 어절)과 영어 번역문(TT, 157,366 어절), 그리고 목표언어 비번역텍스트인 미국 법령(TL, 649,048 어절)으로 구성된 총 881,780 어절 규모의 코퍼스 분석을 통해 한국 법령의 영어 번역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수동태 번역 경향에 대해 고찰한다. 문헌에 의하면 일반적인 텍스트보다 법률텍스트에서 수동태의 활용이 더욱 빈번하다고 하나 법률텍스트 및 법률번역에서 수동태 사용 빈도에 대한 실증 연구는 미진하다. 그간 번역학연구에서 소수이기는 하나 언어적 차이와 함께 수동태 번역을 다룬 연구는 있었다(이영옥 2000; 조인정 2005; 김지은 2008a, 2008b). 하지만 법률번역에서 수동구문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고 법언어학 연구 역시 피동과 능동의 잘못된 용례 분석에 그친다(김문오 2001, 2002). 법령 번역문에서 수동태가 적지 않다는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ST와 TT, 그리고 TL 법률 텍스트에서 수동태 빈도를 비교하고, TT에 나타나는 수동태가 ST의 피동구문을 따른 것인지, 혹은 다른 요인이 있다면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 코퍼스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TT에서 제시된 수동태의 적절성을 TL의 용례에 비추어 비교 분석하여 번역 교육 및 법령 번역의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이론적 배경이 되는 피동/수동구문 및 법률번역에 관한 주요 연구를 간략히 살펴본 다음, 본 연구를 소개하고 연구 결과 및 함의 등을 차례로 논하겠다.

2. 이론적 배경

2.1 피동문(수동태) 번역 선행연구

피동문이 과연 한국어 문법범주에 맞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포함하여 피동의 정의와 범위 같은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국어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다(서민정 2018: 5). 여기서는 한국어와 영어의 수동태 용법과 번역에 대한 함의만 간단히 다루겠다. 피동은 주어가 다른 힘에 의해 이루어지는 행동이

나 작용을 입음을 일컫는 의미범주이다(김병건 2016: 10). 피동은 다양한 방식으로 실현되는데 한국어에서 용어 어간에 ‘이’, ‘히’, ‘리’, ‘기’와 같은 피동접사로 파생된 어휘에 의해서이거나 ‘-어지다’, ‘게 되다’가 결합하거나 ‘-되다’, ‘받다’, ‘당하다’가 서술어인 경우 피동표현으로 간주된다(송병학 1979; 최규수 2005; 김병건 2016; 서민정 2018). 피동을 문법범주로서 피동의 대상문으로 능동구문을 바라보는 입장도 있지만 둘 사이에 규칙적인 대응관계가 반드시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임홍빈 장소원 1995; 김병건 2016: 11). 구어체 코퍼스 자료를 토대로 한 김병건(2016)의 연구에 의하면 피동은 피행위주가 화제(토픽)의 자리에 위치한다는 정보구조상 특징과 관련하여 행위주가 맥상상 중요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거나, 없을 때 사용되며, 담화상 중심이 되는 화제를 유지하는데에도 사용된다(김병건 2016: 26).¹⁾ 또한 우회적 표현을 통해 대인관계적 의미에서 ‘공손’과 ‘부담줄이기’ 기능을 위해서 사용되기도 한다(김병건 2016: 27).

한국어에 비해 영어의 수동태는 ‘be 동사+과거분사’로 형태가 단순하고 식별이 용이한 편이다. 수동태는 문법구조상 목적어를 강조한다든지, 주어를 밝히지 않거나, 주어가 알려지지 않았단지, 이미 문맥을 통해 주어가 알려져서 중복할 필요가 없을 때 또는 일반적인 진리를 말할 때 사용되며, 구어에 비해 문어에서, 그리고 특정 장르에서 많이 사용되는 편이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명료한 소통을 위해 능동태를 선호한다(Biber et al. 1999: 938; Columbia Law School n.d.; European Commission 2014).

영어의 경우, 문장 구성에 주어가 필수적이며, 명사 및 명사형을 목적으로 취하는 전치사 구문이 발달했고, 타동사 또한 다양하게 발달했는데 이러한 언어적 특징으로 한국어보다 영어 사용자가 수동구문을 많이 사용하며, 수동구문 사용영역의 차이가 있다(이영옥 2000: 60-62). 이영옥(2000: 62)에 따르면, 소재(location)와 연속을 지칭하는 경우와 지각에 관련된 경우, 한국어로는 수동구문이 자연스럽지만 영어로는 보어를 수반한 자동사 구문이 자연스럽다. 한편 영어에서는 감정 및 지각 상태, 대동 및 연속, 존재 및 처소, 간접목적어 및 전치사의 목적어를 주어화하는 경우 수동구문이 자연스럽지만 한국어로 옮길 때는 능동구문이 자연스러운데 이러한 언어적 차이를 번역 시 고려할 필요가 있

1) 21세기 세종계획에서 구축한 원시 발문치 중 일상대화 자료를 토대로 한 연구다.

다(이영옥 2000: 69). 이 점을 고려하여 영한 번역에서는 자연스러운 목표 언어 표현을 위해 영어 수동구문을 기계적으로 수동구문으로 번역하는 것보다 능동구문으로 번역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만 태(voice)의 변화는 화용적 의미 내지 담화기능의 변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 원문과 번역문의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최진실 박기성 2012: 110).²⁾

법률번역 연구 중에서 유정주(2015b, 2017)가 비엘(Biel 2014a)을 인용하여 법령 코퍼스의 텍스트 일치성을 위한 국지적 범주를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의 하나로 수동태와 비인칭을 언급한 바 있고, 법언어의 대표적인 특성 중 하나로 수동태의 과다 사용(김도훈 손수연 2011: 10-13)이 꼽혔으나 이에 대한 실질적인 분석은 없어 연구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2.2 법률번역 선행연구

직접적으로 수동태와 법률번역을 다룬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본 연구가 ST와 TT 및 TL 비번역텍스트의 수동구문 빈도를 비교하는 연구이고, 이는 번역텍스트의 특성에 대한 연구로 간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소절에서는 번역텍스트의 특성과 비번역텍스트와의 텍스트 일치성(textual fit) 등을 규명한 주요 선행연구를 간략히 살펴보겠다. 비번역텍스트와 구분되는 번역텍스트의 특징인 번역보편소(Baker 1993) 개념이 법률번역 연구에는 비교적 최근에야 적용되기 시작했다. 코퍼스 분석을 통해 단순화, 명료화, 명사화 등 번역텍스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번역언어의 정규성(regularity)과 정형성(formulaicity)을 다룬 법률번역 연구가 여기에 해당한다.

첫째로 소개할 폰트란돌포(Pontradolfo 2011)의 연구는 단일언어 코퍼스인 이탈리아 대법원의 판결문과 비교코퍼스인 유럽연합 재판소와 인권재판소의 판결문에 대한 이탈리아어 번역텍스트의 어법(phraseology) 사용 패턴 분석을 통해 법률번역 텍스트에도 비번역텍스트와 다른 언어사용 패턴이 있음을 확인했다. 폰트란돌포(2011)는 판결문 장르에만 사용된 언어 및 용어를 가리키는 ‘루틴 포뮬러(routine formulae)’와 ‘어휘적 언어’, ‘전치사구’ 등 세 가지 언어사용

을 분석했다. 단일어 코퍼스에 비해 번역텍스트에서 루틴 포뮬러가 훨씬 적게 나타났는데 연구자는 이를 해석을 용이하게 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 번역자의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Pontrandolfo 2011: 224). 한편 기관별 판결문 번역텍스트간 비교분석에서 드러난 루틴 포뮬러 빈도의 차이는 번역문에서 자주 보이는 어휘 변이(variation)와 함께 제도번역에서 작용하는 기관 고유의 번역문화 영향을 시사했다(Pontrandolfo 2011: 224). 또한 어휘적 언어에 해당하는 ‘주어 명사와 동사(구)’의 결합 분석 결과, 법률텍스트의 특징인 주어 후치가 번역텍스트에 현저히 적은 반면, 전치사구 다양성은 높게 나타났다(Pontrandolfo 2011: 225-330).

둘째, 대표적인 법률번역 코퍼스 연구자인 비엘(Biel 2014a, 2014b)은 텍스트 일치성의 관점에서 EU법 폴란드어 번역텍스트(TT)와 폴란드어 비번역 법령(TL)의 어법과 언어 사용 패턴 차이를 분석했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TL은 내적 결속구조와 정확성 구현을 위해 텍스트 내적 지시어(intratextual references)를 많이 사용하는 반면 TT는 텍스트간 연결(intertextual links) 장치에 의존하는 차이가 있었고, TT의 언어와 구, 지시어 사용 등 어법이 비전형적인 특성을 보이는 등 목표언어 관습과 간극을 보였다(Biel 2014b: 190). 비엘(2014b)에 의하면 폴란드 법령 언어의 패턴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언어처리 노력이 절감되고, 신정보와 구정보의 구분이 용이하며 기능성도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목표언어권 법언어의 정형화된 패턴을 따르지 않는 폴란드어 번역텍스트는 효과적인 소통을 저해할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도 비엘(2018)은 EU법 번역텍스트가 타입(type), 토큰(token), 다발 내 단어 비율 면에서 정형성(formulaicity)이 높다는 결과를 확인했는데, 이는 폰트란돌포(2011)의 단일언어 비교코퍼스 연구 및 EU 판결문 번역문과 비번역 이탈리아어 판결문 텍스트의 어법을 비교분석한 폰트란돌포(2018)의 연구 결과와 어느 정도 일치한다. 폴란드 법률 비번역텍스트(TL)와 EU 법률 번역텍스트(TT)가 공유하는 어휘다발이 특히 적다는 것이 번역텍스트의 정형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³⁾

법률번역 텍스트의 비교 연구는 언어권별 법률텍스트의 특성과 ST 대비

2) 최진실 박기성(2012)은 영어 뉴스 텍스트의 수동구문이 한국어로 번역되는 현상에 초점을 맞추어 언어적 차이 외에 능동구문 번역 현상에 작용한 요인을 분석한 바 있다.

3) 비엘(2018: 23)은 연구 방법상 폴란드 국내법과 EU법이 주제 일치도가 낮기 때문에 비교텍스트로 균형 잡히지 않은 점과 정형성과 관련 있을 만한 번역 결과물과 번역 과정에서 CAT의 영향을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연구의 한계로 인정했다.

TT의 특징을 파악하는 데 효과적이다. 원천텍스트와 목표텍스트로 구성된 병렬 코퍼스 기반 법률번역연구는 법언어의 특성(명사화, 수동태, 시스템 고유의 용어(system-bound term), 생략구 등)과 번역기술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번역보편소를 파악함으로써 법률번역 교육과 실무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연구 방법이다(Pontrandolfo 2019: 22). 비엘 외 2인(Biel et al. 2019)은 법조문과 판결문을 포함한 네 개 장르에 해당하는 폴란드어 번역텍스트 병렬코퍼스와 폴란드어 비번역텍스트 비교코퍼스를 합한 대규모 코퍼스를 토대로 언어의 정형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비번역 TL에 비해 폴란드어 TT에서 정형성이 높게 나타났고, 정형성 수준은 장르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장르에 부합하는 언어사용역과 이에 맞는 적절한 어법 구사는 목표언어 독자의 수용가능성과 직결되는 번역 품질평가에서 중요한 요소다(Colson 2008; Pontrandolfo 2011). 언어방향성으로 볼 때 BA번역보다 AB번역에서 비정형화된 표현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Giczela-Pastwa 2019: 49). AB번역에 해당하는 폴란드 법의 영어번역텍스트(TT)와 영어 비번역텍스트(TL)인 영국법령의 비교코퍼스 분석을 통해 다중어휘단위(MWU)를 살펴본 기젤라 파스트와(Giczela-Pastwa 2019)는 번역코퍼스에서 비정형화된 언어의 빈출현상을 텍스트 일치성이 낮다는 증거로 보고, ST 구조의 영향으로 인한 간섭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어 특성상 법령 번역이 대부분 AB번역임을 감안할 때, 비교코퍼스 및 병렬코퍼스를 토대로 한 연구는 법률번역 교육 및 실무에 참고할 만한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 소개한 법률번역 연구는 ST와 TT간의 등가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목표언어 장르 관습에 부합하는 정도를 중시하는 목표지향적 번역품질에 관심을 기울인 연구라는 공통점이 있다.

서구 언어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법령 번역 연구 방법을 한영 법령 번역에 적용하여 국내 번역학 연구 및 코퍼스 연구의 지평을 넓히고, 번역자 관점에서 법언어에 대한 이해를 높인 유정주(2015a, 2015b)는 ‘shall’의 빈번한 사용을 중심으로 한국 법령 번역문(TT)이 TL 비교코퍼스와 언어적 거리를 보이는 현상을 고찰했다. 또한 유정주(2017)는 텍스트 일치성을 정량적으로 분석 평가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했다. 이와 같이 목표독자의 기대규범을 평가기준으로 삼아 TT와 TL 비번역 법률텍스트와 비교하여 번역물의 품질을 분석, 평가하는 접근

방식은 단순히 ST와 TT 간 일치만 따지는 평가 방식에 비해 시대적 필요성에 부응하는 동시에 법률번역의 스타일 측면을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상 문헌연구를 통해 ST와 TT 그리고 TL 비교분석을 위한 코퍼스 연구의 장점을 확인하고, 한국어와 영어 수동태의 담화 문법적 차이를 다룬 번역학연구가 미진할 뿐 아니라 국내외적으로 비교 코퍼스 및 병렬 코퍼스를 활용하여 법률번역에서 수동태를 고찰한 법언어학 차원의 연구도 부진하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대량의 텍스트를 분석할 수 있는 코퍼스 연구의 장점을 기반으로 번역텍스트의 언어적 특성을 파악하고, 비번역텍스트와 비교분석함으로써 수동구문을 중심으로 법률 텍스트의 언어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물론 원천언어권과 목표언어권 사이의 법언어 관습상 차이를 인지하면서 법률번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번역 교육 및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번역 품질에 대한 관점을 확장하는 의의가 있다.

3. 연구

3.1 연구의 목적 및 방법

상기에서 논의한 한국 법령의 영어 번역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수동구문을 보다 실증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는 한국 법령에서 사용된 피동구문과 한국 법령의 영어 번역에서 사용된 수동구문의 빈도를 비교 및 분석하고, 한국법의 영어 번역과 목표언어 비번역텍스트인 미국 연방법령에서 나타나는 수동구문 빈도를 비교 및 분석하였다.

한국 법령의 연구 대상(ST)으로 사법(私法) 중 대표적인 민법(제14965호)과 대표적인 공법(公法)의 하나인 형법(제15982호)을 선택하였으며, 실체법인 민법과 형법에 대해 각각의 소송절차를 규정하는 절차법인 민사소송법(제14966호) 및 형사소송법(제16850호)을 포함하였다. 이 중 민법은 총 5편으로 구성되어, 총칙, 물건, 채권, 친족, 상속에 대한 규정을 제공하는데, 이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목표언어 비번역텍스트인 미국 법령의 내용을 고려하여 제4편 친족과 제5

편 상속을 제외한 1편에서 3편까지 총 766조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민법 외에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은 모두 부칙 및 개정표기를 제외한 전 조항을 모두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ST를 구성하는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에 해당하는 영어 번역문(TT) 코퍼스를 수집 및 구축하였다.⁴⁾ 이에 대한 비교코퍼스(TL)로 목표언어인 영어로 작성된 비번역텍스트인 미국 연방법령⁵⁾을 활용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ST의 대상인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 해당하는 ‘U.S. Code Title 18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U.S. Code Title 18)’과 민사소송법에 해당하는 연방규정인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FRCP)’를 포함하였다. 한편 민법의 경우, 독일로 대표되는 대륙법 체계에 따라 성문법으로 구축한 우리나라와 달리 영미법계를 따르는 미국은 민법을 불문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우리와 같이 하나의 체계화된 법을 가지는 게 아니라 민법의 내용이 여러 법으로 나뉘어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각 주에서 제정한 민법의 내용을 하나로 통일한 연방 차원의 ‘Uniform Commercial Code (U.C.C.)’를 ST와 TT의 민법에 상응하는 법으로 비교코퍼스에 포함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ST 중 민법에서 제4편 친족과 제5편 상속을 제외한 이유는 비교코퍼스의 ‘Uniform Commercial Code’에 친족상속법을 제외한 채권 및 물권에 대한 규정만 명시되어 있어 그 내용에 있어 어느 정도 일관성을 맞추기 위함이다. 연구 대상인 법령에 대해서 일관되게 모두 부칙 및 개정표기를 제외하였다.

한편 ST, TT, TL의 서브 코퍼스 단위를 실체법과 절차법의 묶음으로 하여 ST와 TT는 민법 및 민사소송법과 형법 및 형사소송법, 그리고 TL은 U.C.C. 및 FRCP와 U.S. Code Title 18로 하였다. 서브 코퍼스의 단위를 이와 같이 형성한 주된 이유는 TL 중 U.S. Code Title 18이 우리 법에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해당하는 실체법과 절차법을 하나의 법령 하에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U.S. Code Title 18에 맞추어 ST와 TT에서 형법 및 형사소송법을 ST, TT 각각에서 하나의 서브 코퍼스 단위로 형성하였으며, 형법 및 형사소송법의 단위에 상응하는 민법 및 민사소송법을 또 다른 서브 코퍼스 단위로 하였다. 이와 같은 이

유로 TL의 U.C.C.와 FRCP 또한 하나의 서브 코퍼스를 형성하도록 구성하였다. 정리하면, 본 연구에서는 실체법과 절차법을 하나로 통합한 U.S. Code Title 18을 기준으로 모든 서브 코퍼스가 서로 연관 있는 실체법과 절차법을 한 쌍으로 이루어지도록 했다.

부칙 및 개정표기를 제외한 ST, TT, TL의 규모는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코퍼스의 규모

종류	법명	어절 수 (tokens)	어휘 다양도 (TTR)	STTR	총 어절 수
ST	민법, 민사소송법	39,787	22.60	46.47	75,336
	형법, 형사소송법	35,549	20.84	43.45	
TT	민법, 민사소송법	84,541	4.10	24.57	157,366
	형법, 형사소송법	72,825	4.37	24.23	
TL	U.C.C., FRCP	202,715	2.54	25.64	649,048
	U.S. Code Title 18	446,302	2.08	27.83	

분석 단위는 어절을 기준으로 하여 전체 어절 대비 한국어에서 피동을 나타내는 어절 및 영어에서 수동구문을 나타내는 어절의 출현 빈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단위를 문장이 아닌 어절로 한 이유는 피동 및 수동구문이 문장 전체의 술어를 구성하여 종결형으로 나타나는 사례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관형절과 같이 한국어의 안긴 문장 또는 영어의 종속절에 포함되는 경우 역시 다수 관찰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어 코퍼스에서 피동은 ‘이/히/리/기’의 접사파생에 의한 것, ‘-어지다’ 구성에 의한 것, ‘되다, 받다, 당하다’ 등의 기능동사에 의한 것(목정수 김영중 2006: 377)을 기준으로 이에 해당하는 어절을 선별하였으며, 영어 코퍼스에서 수동은 영어의 수동태가 기본적으로 ‘be + 과거분사’의 형태를 가지는 점에 착안하여 코퍼스에 출현한 ‘be’ 동사의 모든 형태, 즉 ‘are’, ‘be’, ‘been’, ‘being’, ‘is’, ‘was’, ‘were’의 콘코던스(Concordance)를 확인하여 이 중 ‘be’ 동사의 여러 형태 다음에 과거분사가 나타나는 경우를 수집하였다.

분석을 위해 ST, TT, TL에 해당하는 법을 부칙과 개정표기를 제외하고 텍스트 파일(.txt)로 변환하여 WordSmith 6.0에 탑재하였다. 한국어로 작성된 ST 총 75,336 어절에 대한 워드리스트(Wordlist)를 생성하고, 여기에서 앞서 언급한

4) 각 법의 영어 번역문은 한국법제연구원의 대한민국 영문법령 사이트(http://elaw.klri.re.kr/kor_service/main.do)에서 다운로드 받았다.

5) 미국 Cornell Law School에서 제공하는 미국 법령 검색 사이트(<https://www.law.cornell.edu/>)를 활용하였으며, 주석(Note), 개정표시 등은 제거하였다.

대로 한국어의 피동을 만드는 접사 및 동사를 추출한 뒤 해당하는 접사 및 동사 각각에 대한 콘코던스를 확인하여 피동에 해당하는 어절을 수집하였다. 영어로 작성된 TT 157,336 어절과 TL 649,048 어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워드 리스트를 생성하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be’ 동사의 변형을 모두 추출하였으며, 추출한 ‘be’ 동사의 변형 각각에 대한 콘코던스를 확인하여 ‘be’ 동사 다음에 과거분사가 등장하여 실제적으로 수동구문을 나타내는 경우를 최종 수집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3.2 연구 결과

ST에서 등장하는 피동 어절 및 TT, TL에서 등장하는 수동구문의 빈도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피동 및 수동을 나타내는 어절의 출현 빈도수

종류	범명	피동/수동 어절 빈도(회)	비율(%)	총 비율(%)
ST	민법, 민사소송법	378	0.95%	1.04%
	형법, 형사소송법	409	1.15%	
TT	민법, 민사소송법	1,766	2%	2.32%
	형법, 형사소송법	1,895	2.6%	
TL	U.C.C., FRCP	3,696	1.82%	1.66%
	U.S. Code Title 18	7,907	1.5%	

위의 <표 2>를 보면, ST, TT, TL 각각에서 등장하는 피동 및 수동 표현의 빈도수와 함께 각 코퍼스 간 전체 크기가 상이한 점을 감안하여 코퍼스별로 전체 어절 대비 피동 및 수동 표현의 빈도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제시하였다. 이 비율에서 알 수 있듯이 ST에서 피동 표현이 등장한 빈도는 전체 어절 수 대비 1% 내외에 불과하다. 한편 TT에서 수동 표현이 등장한 빈도는 2% 이상으로 ST 빈도의 두 배 이상 높다. TT가 ST의 번역임을 고려할 때, ST의 능동형 중 상당수가 TT에서 피동으로 번역되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한편 비교코퍼스로 TT와 동일하게 영어로 작성되었지만 비번역텍스트인 TL을 확인해 본 결과, 수동 표현의 등장 빈도가 1.5%에서 2% 사이로 ST 보다는 높으나 TT 보다는 현저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TT와 TL에서 수동 표현의 빈도가 출현한 비율

이 ST에 비해 높다는 사실에서 한국어 법령에 비해 영어 법령에서 수동태의 사용이 더 빈번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TL에 비해 TT에서 수동 표현의 빈도 출현 비율이 더 높은 점에서 비번역텍스트에 비해 번역 법령에서 수동 표현이 과다하게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 <표 3>의 코퍼스별로 등장하는 피동 및 수동 표현의 유형을 살펴보면, ST의 경우 법 종류와 상관없이 한국어의 여러 피동 표현 중 특히 피동을 나타내는 동사인 ‘되다’가 ‘-되’, ‘-될’, ‘-되지’, ‘-됨’, ‘-되거나’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피동을 나타내는 경우가 ST의 총 피동 표현 787회 중 704회로 다수를 차지했다. 한편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경우 접사파생 중 ‘이’와 ‘히’가 붙은 피동 표현을 그 다음으로 찾아볼 수 있는 반면 형법 및 형사소송법의 경우 접사파생 외에 ‘받다’, ‘당하다’를 사용한 어휘적 피동 표현이 눈에 띈다. TT의 경우, ‘be + 과거분사’의 형태가 민법과 민사소송법에서 총 1,766회 중 938회, 형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총 1,895회 중 1,233회를 차지하여 전체 수동 표현의 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한편 민법 및 민사소송법에서는 ‘been + 과거분사’의 형태가 369회 등장하여 ‘be + 과거분사’의 형태 다음으로 고빈도 수동 표현인 반면,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서는 ‘is + 과거분사’의 형태가 364회로 ‘be + 과거분사’의 뒤를 잇는 고빈도 수동 표현으로 나타났다. 한편 TL의 경우 ST와 TT의 민법 및 민사소송법에 해당하는 ‘Uniform Commercial Code’와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에서 ‘be + 과거분사’의 형태가 최빈도 수동 표현으로 1,168회 등장하였으며,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 해당하는 ‘U.S. Code Title 18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에서도 ‘be + 과거분사’의 형태가 3,783회를 기록하여 압도적으로 빈도가 높은 수동 표현으로 드러났다. 즉, TT와 TL에서 공통적으로 ‘be + 과거분사’의 형태가 최빈도 수동 표현인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TL에서는 법의 종류와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be + 과거분사’ 다음으로 ‘is + 과거분사’의 형태가 고빈도 수동 형태임이 드러나 ‘been + 과거분사’의 형태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 TT의 민법 및 민사소송법과 차이를 보였다.

<표 3> 코퍼스별 피동 및 수동 표현의 출현 빈도수(단위: 회)

형태	ST		형태	TT		TL	
	민법/ 민소법	형법/ 형소법		민법/ 민소법	형법/ 형소법	U.C.C./ FRCP	U.S. Code Title 18
되다	338	366	are	80	61	214	302
이	12	10	be	938	1,233	1,168	3,783
히	18	0	been	369	162	308	650
기	2	0	being	7	19	57	158
-어지다	3	10	is	313	364	1,688	1,713
발다	5	9	was	49	54	234	440
당하다	0	14	were	10	2	27	51
총합	378	409	총합	1,766	1,895	3,696	7,907
	787			3,661		10,793	

한국어의 피동 및 영어의 수동구문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형태를 바탕으로 피동 및 수동 표현의 빈도를 집계한 상기의 <표 2>와 <표 3>은 영어로 작성된 TT나 TL에 비해 한국어인 ST의 피동 표현 빈도가 상당히 낮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이는 수동구문을 구성하는 형태가 ‘be + 과거분사’로 쉽고 명확하여 태가 분명히 드러나는 영어에 비해 한국어에서 피동 표현을 만드는 형태적 피동형 표지가 상대적으로 협소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이를 통해 눈에 띄는 형태상의 피동 표지가 사용되지 않은 형태적 능동구문이나 그 의미는 피동인 의미상 피동문이 한국어 법령에 다수 존재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에 더해 ST에 비해 TT에서 수동태가 과다하게 사용된 점은 한국어 법령에서 그 형태상으로는 능동구문으로 분류되나 사실상 그 의미는 피동구문인 조항이 다수 존재하여, 이러한 의미상 피동구문이 TT에서 수동구문으로 발현된 것일 수 있다는 분석 또한 가능하다. TL에서 수동태가 ST에 비해 상당히 잦은 빈도로 등장한 경향은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ST에 비해서 TT에서 수동 표현이 과다 사용된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 앞서 ST와 TT 수동태를 비교 분석한 결과, 주어가 알려지지 않거나 모호할 경우 수동태의 사용이 일반적인 영어의 특성에 따라 수동태로 번역된 경우가 상당했다. 영어 법령에서 수동태의 사용이 한국어 법령의 주어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한국어 법령에서 빈번한 주어 생략 문제를 가독성 측면에서 다룬 구명철(2018)에서 제시한대로 법

조문 주어가 가리키는 선행사의 분류를 분석의 큰 틀로 삼았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대상인 민법과 민사소송법, 그리고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서 주어의 생략을 생략된 주어의 선행사가 문장 외부에 있는 경우와 생략된 주어가 언어외적 선행사를 갖는 경우로 구분하고, 다시 후자를 생략된 주어가 일반적인 사람인 경우와 법률 행위의 주체가 되는 법원 등 국가기관인 경우로 구분하여 총 세 가지로 분류 및 분석하고, 각 경우에 대해 TT에서 사용된 수동 표현의 양상과 TL에서 사용된 수동 표현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비교해보고자 한다. 생략된 주어의 선행사가 문장 내부에 있는 경우, 코퍼스를 확인한 결과 문장 내 유추를 통해 생략된 주어를 살려서 번역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으로 확인되어 본고의 태 전환 양상과는 무관하여 분석을 위한 분류에서 제했다.

3.2.1 생략된 주어의 선행사가 문장 외부에 있는 경우

구명철(2018: 27-28)은 한국어 법조문에서 나타나는 주어생략 현상과 주어복원 가능성을 가독성 관점에서 분석하면서 생략된 주어의 선행사가 문장 외부에 있는 경우를 언급했다. 이에 해당하는 주어 생략 현상이 본 연구의 ST에서 빈번하게 나타났으며, 이같이 ST에서 주어가 생략된 경우 TT에서 수동태를 활발하게 활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어의 선행사가 문장 외부에 있는 경우와 관련해서 두 가지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아래의 민법 제91조 채권변제의 특례에 대한 <예 1>을 보면, ST의 제91조 2항의 생략된 주어가 2항의 외부인 1항에서 명시된 ‘청산 중의 법인’으로 1항과 동일한 주어를 가지나 TT에서 생략된 주어를 찾아서 번역하는 대신 2항의 주제에 해당하는 ‘조건있는 채권,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 기타 가액의 불확정한 채권’을 주어로 하는 수동태를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생략된 주어를 번역에서도 그대로 생략하는 전략을 택함으로 인해 ST는 주어가 생략된 능동태이나 TT는 수동태가 되었다.

<예 1>

ST: 제91조 (채권변제의 특례)

①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조건있는 채권,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 기타 가액의 불확정한 채권에 관하여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TT: Article 91 (Special Case in Discharge of Obligation)

- (1) The juristic person which is in the course of liquidation may discharge those obligations which are not yet due.
- (2) In the case of the preceding paragraph, in regard to the claims with conditions, claims with indefinite period of duration, and other claims whose amount is not determined, they shall be discharged at the amount as appraised by an appraiser appointed by the court.

아래의 민법 제204조 점유의 회수에 대한 <예 2>도 <예 1>과 동일하게 선행사가 문장 외부에 있으며 주어가 생략된 경우다.

<예 2>

ST: 제204조 (점유의 회수)

- ①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TT: Article 204 (Recovery of Possession)

- (1) If a possessor has been deprived of the possession of his property, he may demand the return of that which he was deprived as well as compensation for damages.
- (2) No demand under the preceding paragraph may be brought against a limited successor in title of a dispossessor, unless such successor in title was aware of dispossession.
- (3) The right of demand under paragraph (1) shall be exercised within one year from the time of dispossession.

상기 <예 2>의 2항 첫 번째 문장과 3항은 각각 ‘(점유자는) 전항의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와 ‘(점유자는) 제1항의 청구권을...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로 두 문장 모두 주어인 ‘점유자는’이 2항과 3항의 외부인 1항에 있으면

서 204조 내에서 세 개의 항이 모두 동일한 주어를 갖기 때문에 생략되었다. 한편 TT를 보면 주어가 생략되지 않은 1항에서는 점유자의 번역에 해당하는 ‘a possessor’와 이를 다시 받는 ‘he’를 주어로 하는 능동태를 사용한 반면, 주어가 생략된 2항과 3항에서는 생략된 주어를 찾아서 명시하는 대신 2항과 3항 내에서 주격 표지 ‘-은’을 갖는 ‘청구권’을 주어로 하여 ‘(조동사) + be + 과거분사’ 형태의 수동태를 사용하였다. <예 1>과 마찬가지로 <예 2>에서도 ST의 경우 피동의 표지를 사용하지 않은 능동태이나 TT는 이를 수동태로 바꾸어 번역한 것을 알 수 있다.

상기의 <예 1> 및 <예 2>와 같이 생략된 주어를 가리키는 선행사가 문장 외부에 있는 경우 법령에서는 대부분 선행사가 같은 조 내 선행하는 항에 위치한다. 따라서 이같이 생략된 주어를 복원하기가 어렵지 않음에도 TT에서는 생략된 주어를 복원하여 ST와 동일하게 능동구문으로 번역하기보다 불분명한 주어 대신 분명하게 드러나는 목적어를 주어로 취하는 수동태로 번역함으로써 ST에 비해 TT에서 수동태가 과하게 나타나는 현상에 일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3.2.2. 생략된 주어가 일반적인 사람인 경우

법적 행위를 규정하는 법령의 특성상 법적 행위를 실행하는 행위자가 주어일 때 이 행위자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고, 주어가 일반적인 사람, 예를 들면 ‘누구나’, 또는 ‘모든 국민’일 때 생략될 가능성이 높다(구명철 2018: 28-30). 영어의 경우, 행위자, 즉 주어가 일반적인 사람일 때 ‘they’, ‘we’, ‘you’를 주어로 삼아 능동구문을 만들거나 행위자를 생략하고 목적어를 주어로 삼아 수동구문을 만드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실제로 TL을 살펴보면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Uniform Commercial Code’,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U.S. Code Title 18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전체에서 ‘they’는 총 134회(0.02%), ‘we’는 총 15회, ‘you’는 총 43회⁶⁾ 사용되어, 일반적인 사람을 지칭하는 인칭대명사가 주어로 사용된 경우가 비번역텍스트에서 흔하지는 않으나 종종 있을 수 있음을 증명한다. 한편 번역텍스트인 TT를 살펴보면 TT 전체에서 ‘they’만 총

6) ‘we’와 ‘you’는 전체 토근 대비 상당히 과소하게 사용된 편(< 0.001%)이며 이러한 경우 WordSmith 6.0은 전체 토근 대비 출현빈도에 대한 백분율을 제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they’의 빈도에 대한 백분율만 제시하였다.

67회(0.04%) 사용되어 TL에 비해 그 빈도가 조금 높을 뿐 ‘we’와 ‘you’는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TL에 비해 TT에서 일반적인 사람을 주어로 사용한 빈도가 현격하게 낮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일반적인 사람인 주어가 생략된 ST가 많은 경우 TT에서 수동태로 번역되었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신의성실에 대한 민법 제2조 2항의 <예 3>은 일반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주어가 생략된 ST의 능동구문이 TT에서 수동구문으로 번역된 현상을 잘 보여준다.

<예 3>

ST: 제2조 (신의성실)

-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 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TT: Article 2 (Trust and Good Faith)

- (2) No abuse of rights shall be permitted.

상기의 <예 3>에서 ST는 사실상 ‘(누구나) 권리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의 뜻으로 주어인 ‘누구나’ 또는 ‘모든 사람’에 해당하는 주어가 생략되었으며 사실상 목적어인 ‘권리’에 대해 목적격 조사 ‘을/를’을 대체하는 보조사 ‘-는’을 붙여 마치 ‘권리’가 주어인 듯 한 문장을 구성하였다(장소원 2009: 15). 이에 대해 TT는 생략된 주어에 대해 ‘they’, ‘we’, ‘you’와 같은 인칭대명사를 활용한 능동구문을 구성하는 대신 ST 문장의 실질적인 목적어인 ‘권리’를 포함하는 ‘권리의 남용’을 주어로 한 수동태를 만드는 전략을 택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특별재판적을 규정한 민사소송법의 제7조에서 제24조에서도 빈번하게 나타난다. 특별재판적을 규정하는 상기의 조항들은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 대개 ‘...에 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에 제기할 수 있다.’의 문장 구성을 가지는데, 이는 사실상 ‘(누구나) ...에 대한 소를 ...에 제기할 수 있다.’의 의미로 ‘소를 제기하는’ 주체인 ‘누구나’ 또는 ‘모든 사람’이 생략된 구문이다. 이에 대해 TT는 일관되게 ST와 동일하게 주어를 생략하고 ‘...경우에는’에 해당하는 ‘소’를 주어로 하는 수동구문으로 문장을 구성 및 번역하는 양상을 보였다. 아래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8조에 해당하는 <예 4>는 ST에서 소를 제기하는 주체가 일반적인 사람으로 생략된 경우 TT에서 수동구문으로 태가 전환되어 번역된 현상을 잘 보여준다.

<예 4>

ST: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TT: Article 8 (Special Forum of Place of Residence or Place of Obligation Performance)

A lawsuit concerning a property right may be brought to the court having the jurisdiction over the place of residence or the place of obligation performance.

3.2.3. 생략된 주어가 법률 행위의 주체가 되는 법원 등 국가기관인 경우

법령의 특성상 생략된 주어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적인 사람인 경우와 더불어 법률 행위의 주체가 되는 법원과 같은 국가기관일 가능성이 높다(양명희 2016: 125; 구명철 2018: 30-31). 실제로 형법에서는 그 특성상 ‘벌하다’, ‘벌하지 아니하다’ 및 ‘처하다’와 같은 동사가 가장 많이 사용된 술어인데(양명희 2016: 124), 이러한 술어를 사용한 법령이 대부분 행위의 주체인 국가기관, 즉 ‘법원’ 또는 ‘법관’이 드러나지 않는 주어 생략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연구 결과 이에 대응하는 TT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ST와 동일하게 행위의 주체인 국가기관을 생략하는 대신 수동태로 번역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아래의 <예 5>는 형법 제88조 내란목적의 살인에 대한 조항으로 형법에서 대표적인 ‘처하다’가 수동태로 번역된 경우다. 한국어 형법에서 ‘처하다’의 변형인 ‘처한다’는 총 302회 사용되어 형법 전체 어절의 2.71% 차지하는데, 이 대부분이 행위의 주체인 국가기관이 생략된 주어 생략 문장이다. <예 5>의 ST를 보면, ‘...한 자’를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는’ 주체는 법에서 정한 ‘법원’이거나 ‘법관’일 것이다. 하지만 ‘...에 처하는’ 행위를 실행에 옮기는 주체는 드러나지 않고, ‘...에 처해지는’ 대상만 명시되어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해 TT에서는 대부분이 아래 <예 5>와 같이 ‘...shall be punished by 형벌’로 번역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실제로 TT의 형법에서 ‘...shall be punished’는 총 371회 사용되었다.

<예 5>

ST: 제88조 (내란목적의 살인)

국토를 침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TT: Article 88 (Homicide for Purpose of Insurrection)

A person who kills another for the purpose of usurping the national territory, or subverting the Constitution shall be punished by death, imprisonment for life or imprisonment without prison labor for life.

한편 TT와 같이 행위의 주체가 되는 국가기관을 생략하는 대신 수동태를 사용하는 현상은 TL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되었다. 본고의 연구 대상인 TL 전체를 대상으로 이와 같은 행위의 주체에 해당하면서 주어 자리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은 법원에 해당하는 ‘court’, ‘courts’, ‘courtroom’의 빈도를 살펴본 결과, ‘court’는 총 0회, ‘courtroom’은 총 9회, ‘courts’는 총 133회(0.02%) 사용되었으며, 사용된 ‘courtroom’과 ‘courts’의 용례를 분석한 결과, 이들 단어가 대부분 주어가 아닌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shall be punished’의 형태는 TL 중 형법에 해당하는 ‘U.S. Code Title 18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에서도 아래의 <예 6>과 같이 형벌을 규정함에 있어서 자주 사용하는 어구로 나타났다.

<예 6>

TL: §39B. Unsafe operation of unmanned aircraft

(a) OFFENSE. – Any person who operates an unmanned aircraft and:

(1) Knowingly interferes with, or disrupts the operation of, an aircraft carrying 1 or more occupants operating in the special aircraft jurisdiction of the United States, in a manner that poses an imminent safety hazard to such occupants, shall be punished as provided in subsection (c).

표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면 TT의 경우 일관되게 ‘shall be punished by 형벌’의 형태로 사용된 반면, TL의 경우 ‘shall be punished’ 다음에 위의 <예 6>과 같이 형벌이 아닌 ‘as provided in...’과 같은 근거 조항이 나오는 경우가 다수 보였으며, ‘shall be fined’, ‘shall be forfeited’, ‘shall be imprisoned’와 같

이 ‘punished’ 자리에 TT에서는 ‘by’ 이하에서 기술하는 구체적인 형벌이 직접 나오는 경우 또한 상당수 있었다.

형법에서 ‘벌한다’(2회 사용), ‘벌하지 아니한다’(13회 사용, 0.12%), ‘처벌한다’(47회 사용, 0.42%)가 서술어로 사용된 법령은 총 62건으로 이들 또한 ‘처한다’와 동일하게 행위 주체인 국가기관이 생략된 한국어 문장은 주어가 생략된 능동구문이나 영어로 번역되면서 수동태로 전환되는 경향을 보여 TT의 수동태 과다 사용 양상을 뒷받침한다. 아래의 형법 제9조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조항인 <예 7>과 중범을 정의한 형법 제32조 1항에 대한 <예 8>은 ‘벌하지 아니한다’와 ‘처벌한다’를 각각 ‘shall not be punished’와 ‘shall be punished’로 번역하여 수동구문을 구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예 7>

제9조 (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Article 9 (Criminal Minors)

The act of a person under fourteen years of age shall not be punished.

<예 8>

ST: 제32조 (중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중범으로 처벌한다.

TT: Article 32 (Accessories)

(1) Those who aid and abet the commission of a crime by another person shall be punished as accessories.

상기 <예 5>, <예 7>, <예 8>의 ST 술어는 앞서 언급한 대로 각종 죄와 이에 따른 처벌을 규정하는 형법의 특성상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형벌 동사들의 여러 종류이다. 이와 같은 동사를 술어로 취하는 형법 조항들은 공통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국가기관인 주어가 생략되어 있으며 영어로 번역되면서 ‘형벌을 부과하는’ 의미의 ‘punish’를 동사로 하는 수동구문으로 전환되어 TT에서 ST에 비해 수동태가 과다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뒷받침한다.

7) 전체 토큰 대비 상당히 과소하게 사용된 편(< 0.001%)이어서 WordSmith 6.0에서 전체 토큰 대비 출현빈도에 대한 백분율을 제시하지 않는다.

한편 상기에서 언급한 형법의 여러 사례 외에 민법과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서도 행위의 주체인 국가기관이 생략된 법령을 다수 찾아볼 수 있었으며 형법에서 만큼은 아니지만 이러한 문장들 중 상당수가 TT에서 수동구문으로 번역되었음을 확인했다.

여기서 주목할 만 한 점은 구명철 정수정(2018: 16)이 한국어에서 피동형을 만드는 대표적인 접미사 중 하나인 ‘-되다’에 대해 한국어 법령에서 피동의 의미로 사용될 때에도 ‘-되다’ 동사를 취할 수 없는 동사들이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앞서 형법과 관련해서 언급한 ‘처하다’ 외에 민법과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에서 주요하게 쓰인 서술어인 ‘가하다’, ‘명하다’, ‘면하다’, ‘정하다’, ‘제하다’와 같은 술어들이 모두 여기에 해당하는 ‘1음절 한자 + -하다’의 형태를 취하며 동시에 행위의 주체가 되는 국가기관이 생략된 형태의 능동구문 형태라는 사실이다. 이로 인해 ST는 피동의 표지가 없는 명백한 능동구문으로 분류되는 반면 이에 해당하는 TT는 대체로 수동태로 번역되어 TT에서 수동태가 과도하게 사용된 현상을 뒷받침한다.

아래의 <예 9>와 <예 10>은 각각 민사소송법 제3조 사람의 보통재판적에 대한 조항과 제26조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에 대한 조항으로 한국어 법령의 ‘정한다’라는 ‘1음절 한자 + -하다’를 서술어로 취하며 ‘정하는’ 행위를 하는 주체인 국가기관이 생략된 능동구문이다. 한편 TT에서 주체는 모두 생략되었으며, ‘정한다’는 공통되게 영어로 ‘shall be determined’로 번역되어 수동태를 이루었다.

<예 9>

ST: 제3조 (사람의 보통재판적)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

TT: Article 3 (General Forum of Person)

General forum of a person shall be determined by his/her domicile: Provided, That where the person has no domicile in the Republic of Korea or his/her domicile is unknown, it shall be determined pursuant to his/her residence, and if the residence is unfixd or unknown, it shall be determined pursuant to his/her last domicile.

<예 10>

ST: 제26조(소송목적의 값의 산정)

① 법원조직법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관할을 정하는 경우 그 값은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정한다.

TT: Article 26 (Computation of Value of Subject-Matter of Lawsuit)

(1) Where any jurisdiction is determined by the value of a subject-matter of a lawsuit in the Court Organization Act, such value shall be determined by calculating on the basis of the benefits as alleged by the lawsuit.

상기의 사례에서 언급한 ‘1음절 한자 + -하다’ 외에도 한국어 법령 언어는 법률 언어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서술성 명사와 ‘-하다’가 결합하여 술어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구명철, 정수정 2018: 12). 예를 들어, ‘청구’, ‘준용’, ‘감경’, ‘추정’과 같은 서술성 명사가 ‘-하다’와 결합하여 ‘청구하다’, ‘준용하다’, ‘감경하다’, ‘추정하다’의 형태를 띠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서술성 명사 + -하다’가 결합한 형태의 비정형적인 술어 또한 그 행위의 주체로 국가기관을 취하나 주체가 생략되어 있으며 ‘-하다’인 서술어의 형태로 인해 주어가 생략된 능동구문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편 이와 같이 법률 언어에서 주로 사용되는 한자어 서술성 명사와 ‘-하다’가 결합한 형태의 비정형적인 술어 또한 영어로 번역되면서 수동태로 전환되어 TT에서 수동태 과다 사용의 원인이 된다.

아래 <예 11>의 민법 제579조 채권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조항에서는 한자어 서술형 명사 ‘추정’과 ‘-하다’가 결합한 형태인 ‘추정한다’에 대해 ST가 ‘추정하는’ 행위의 주체인 국가기관은 생략된 채 능동구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이에 해당하는 TT는 ST와 동일하게 행위의 주체를 생략하는 대신에 술어를 ‘is presumed’로 번역하여 수동태를 구성하였음을 보여준다.

<예 11>

ST: 제579조 (채권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TT: Article 579 (Sale of Claim and Seller's Liability for Warranty)

(1) If the seller of a claim warrants the solvency of the obligor, he is presumed to have warranted his solvency at the time the contract was entered.

(2) If the seller of a claim which is not yet due warrants the solvency of the obligor, he is presumed to have warranted his solvency at the time when the claim becomes due.

TT에서 ‘추정한다’는 예외 없이 그 주체인 국가기관을 생략한 채 ‘be presumed’ 형태의 수동태로 사용된 반면 TL에서는 ‘presume’이 행위의 주체인 국가기관, 즉 법원에 해당하는 ‘court’를 주어로 하는 능동형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종종 보인다. 일례로 민사소송법에 해당하는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의 Rule 37 중 일부를 보면 아래의 <예 12>와 같이 ‘court’를 주어로 하여 ‘presume’을 능동형으로 사용하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예 12>

TL: Rule 37

(e) FAILURE TO PRESERVE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If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that should have been preserved in the anticipation or conduct of litigation is lost because a party failed to take reasonable steps to preserve it, and it cannot be restored or replaced through additional discovery, the court:

(1) upon finding prejudice to another party from loss of the information, may order measures no greater than necessary to cure the prejudice; or

(2) only upon finding that the party acted with the intent to deprive another party of the information’s use in the litigation may:

(A) presume that the lost information was unfavorable to the party;

(B) instruct the jury that it may or must presume the information was unfavorable to the party; or

(C) dismiss the action or enter a default judgment.

위의 사례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한국어 법령 언어에서 두드러지는 한자어 서술형 명사와 ‘-하다’가 결합한 술어 역시 상당수가 그 행위의 주체로 국가기관을 취하나 이 주체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며 수동태로 번역되어 TT에

서 수동태의 과다 사용 경향을 초래했다.

한편 한국 법령에서 국가기관,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사법기관 혹은 법원을 주체로 하는 조항에서 주어가 생략되는 경향은 사법적 판단의 주체가 사법기관 일 것이라는 유추가 맥락상 용이하기 때문일 수 있다. 따라서 형법과 같이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처벌 방법을 상세하게 기술해야 하는 목적을 가지는 법령의 경우 법제 과정에서 쉽게 유추가 가능한 주어를 내세우기보다 범죄에 따라 각기 다른 처벌 방법을 좀 더 드러나게 규정하고자 하였을 것이며, 이와 같은 의도가 TT에서 수동태로 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번역텍스트인 TL에서도 동일한 경향이 나타나는 점은 상기의 해석을 뒷받침하는 좋은 근거라 할 수 있겠다.

3.2.4 시사점

상기의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ST와 TL에 비해 TT에서 수동구문이 과다하게 사용되었으며, ST의 능동구문이 TT에서 수동구문으로 전환된 사례는 ST에서 주어가 생략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경우, ST의 주어가 문장의 외부에 있거나 일반인 또는 법원 등 사법기관인 경우로 나눌 수 있었다.

TT의 사례를 ST 및 TL의 용례와 비교 분석한 결과는 법령 번역에서의 수동태 사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ST의 주어가 생략되었으며 이 주어가 문장 외부에 있는 경우 현재 TT는 다수의 사례에서 생략된 주어를 복원하는 대신 ST의 목적어를 주어로 취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으로 인해 TT에서는 ST의 생략된 주어를 복원하여 간결하고 명료한 능동태로 번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TT에서 목적어를 설명하는 길고 복잡한 부사절을 문장 앞에 배치했으며 이를 다시 받는 대명사를 사용하는 전략을 구사하였다(앞의 <예 1> 민법 제91조 2항 참조). 길고 복잡한 목적어를 주어로 한 수동태는 일반적으로 영어의 수동태 사용에서 지양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형태이다.

이와 같이 ST의 주어가 생략되어 외부에 있는 경우 기계적으로 문장의 목적어를 주어로 하는 수동태로 번역하기보다는 번역 문장의 구성을 비롯한 여러 맥락과 상황을 고려하여 태를 결정할 수 있다. 첫째, 생략된 주어가 외부에 있는 경우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수동태를 사용하고, 그 외의 경우 생략된 주어를 복원하여 능동태로 번역하는 전략이 오히려 번역 법령의 가독성 및 더 나아가 품질에 기여하는 방법이라 사료된다. 참고로 TL에 해당하는 ‘Uniform

Commercial Code’ 제2-328조(아래 <예 13>)를 살펴보면 전항의 주어에 다시 받는 기제로 ‘such’를 활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기제를 한영 법령 번역에서도 활용한다면 불필요하고 기형적인 수동태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예 13>

TL: §2-328. Sale by Auction.

(2) A sale by auction is complete when the auctioneer so announces by the fall of the hammer or in other customary manner. Where a bid is made while the hammer is falling in acceptance of a prior bid the auctioneer may in his discretion reopen the bidding or declare the goods sold under the bid on which the hammer was falling.

(3) Such a sale is with reserve unless the goods are in explicit terms put up without reserve. In an auction with reserve the auctioneer may withdraw the goods at any time until he announces completion of the sale. In an auction without reserve, after the auctioneer calls for bids on an article or lot, that article or lot cannot be withdrawn unless no bid is made within a reasonable time. In either case a bidder may retract his bid until the auctioneer's announcement of completion of the sale, but a bidder's retraction does not revive any previous bid.

둘째, ST에서 생략된 주어가 일반인인 경우 TT에서는 일반인을 지칭하는 인칭대명사 사용을 극도로 피하고 일반인이 주어인 문장을 대부분 수동태로 번역하는 경향이 있었다.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TT 전체에서 일반인을 지칭하는 인칭대명사는 유일하게 ‘they’가 총 67회(0.04%) 사용되었으며, ‘we’와 ‘you’는 단 한 건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일반인을 가리키는 인칭대명사로 활용될 수 있는 ‘one’은 TT 전체에서 총 186회(0.18%) 사용되었으나 사용례 대부분이 인칭대명사와는 상관없는 지시형용사로 사용되어 뒤따라오는 명사를 수식하는 데 쓰였으며, 이중 단 8건만이 일반인을 지칭하는 인칭대명사로 사용되었다. 한편 TL에서는 ‘they’가 총 134회(0.02%), ‘we’가 총 15회, ‘you’가 총 43회 사용되어, 일반적인 사람을 지칭하는 인칭대명사가 주어로 사용된 경우가 비록 흔하지는 않으나 종종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⁸⁾ 하지만 전체 빈도와 빈도의 백분

율 및 실제 용례를 분석한 결과, TL에서 일반인을 지칭하는 인칭대명사의 출현 빈도가 물론 TT에서 보다는 높지만 전반적으로 그 빈도가 TT에서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과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일반인을 가리키는 인칭대명사의 사용을 가급적 자제하는 영어 법령의 장르 관습으로 해석할 수 있어 법령 번역 시 ST의 주어가 일반인이라면 문장의 목적어를 주어로 하는 수동태 전략을 사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법언어의 특징에 해당하는 형벌 동사인 ‘벌하다’(‘벌하다’의 변형인 ‘벌한다’의 형태로 ST 전체에서 총 2회 사용), ‘벌하지 아니하다’(ST 전체에서 총 13회(0.02%) 사용), ‘처하다’(‘처하다’의 변형인 ‘처한다’의 형태로 ST 전체에서 총 314회(0.40%) 사용)가 포함된 문장의 경우, 행위의 주체인 법원 등 국가기관이 생략된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서 TL에서도 ‘court’나 ‘courtroom’ 등을 주어로 사용하는 용례가 매우 드물다는 사실을 코퍼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문장의 주어가 법을 집행하는 사법기관으로 그 주체를 명시하지 않아도 독자가 착오 없이 인식 가능한 경우 번역 시 관련 사법기관을 명시화하는 대신 행위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를 주어로 하는 수동구문이 적절한 전략임을 증명한다. 하지만 일반 민사사건을 다루는 지방법원 외에 가사사건을 담당하는 가정법원이 법을 집행하는 주체가 될 수 있는 민법의 경우, 특히 가정법원에 해당하는 ‘Family Court’를 행위의 주체로 내세워 능동구문을 사용한 경우가 TT에서 총 13회 있는 것으로 보아 행위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를 주어로 하는 수동구문을 구성하는 전략은 법의 종류 및 법을 집행하는 사법기관의 성질을 고려하여 채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TT에서 상기의 사례에 해당하는 수동구문의 동사가 일률적으로 ‘be punished’임에 반해, 동일한 어구에 해당하는 TL의 경우 ‘shall be fined’, ‘shall be forfeited’, ‘shall be imprisoned’로 구체적인 형벌을 직접적으로 명시하여 다양화 및 구체화하는 양상을 발견할 수 있었음을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같은 TL의 용례는 국가기관이 주체인 형벌 동사로 기술된 법령을 영어 수동태로 번역할 때 전체 조항의 내용을 고려하여 보다 구체적인 동사를 선택할 수 있는 번역 전략을 시사한다.

8) ‘one’의 경우 TL에서 빈도가 639회(0.10%)로 상당히 높은 편이기는 하나 이 역시 대

다수가 TT와 유사한 지시형용사이거나 사물을 가리키는 지시대명사였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법령 언어의 특징 중 주요하게 언급되는 수동태가 한국 법령과 영어 번역문, 그리고 미국 법령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보기 위해 총 881,780 어절 규모의 코퍼스를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한국 법령 중 기본법인 민법과 민사소송법 및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대상으로 원문 코퍼스와 번역 코퍼스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비교 코퍼스로 목표언어인 영어로 작성된 미국 법령 중 민법에 해당하는 ‘Uniform Commercial Code’, 민사소송법에 해당하는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그리고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 해당하는 ‘U.S. Code Title 18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를 구축했다. 코퍼스 분석 결과, 수동태의 출현 빈도가 한국 법령 대비 영어 번역 법령에서 훨씬 높게 나타나는 것과 한국 법령에 비해 미국 연방법전에서 수동태를 더 빈번하게 사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한국 법령에 비해 영어 법령의 수동태 사용이 더 일반적이라는 가능성을 시사하지만, 문제는 번역 법령의 수동태 빈도가 미국 법령보다 더 높아 텍스트 수용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다.

번역 법령에서 수동태가 과다하게 사용된 이유는 빈번한 주어 생략과 형태상 능동태이나 의미상 피동이 많은 한국 법언어의 특성에 상당 부분 유래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국 법언어의 특징 중에서도 특히 두드러지는 주어 생략 문제는 번역문에서 수동구문 빈도가 높은 주된 이유 중 하나로 판단된다. 생략된 주어의 선행사가 문장 외부에 있으나 동일한 조항에서 쉽게 유추해낼 수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생략된 주어가 일반적인 사람을 가리키거나 법률 행위의 주체가 되는 법원 등 국가 기관이어서 명시화하지 않은 경우, 원문인 한국 법령은 능동태임에도 번역문에서는 수동태로 전환하는 경향이 강했다. 특히 한국 법언어에서 두드러지는 1음절 한자 및 서술성 명사의 경우 언어적 특징상 그 의미가 능동 또는 피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하다’를 취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 대부분이 그 행위의 주체는 국가기관이지만 주체가 생략되어 주어 생략 구문을 이루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이 주어가 생략되었으나 ‘-하다’의 서술어 형태를 가지는 능동구문 상당수가 수동구문으로 번역되어 원문에 비해 번역문에서 수동태가 과다하게 사용된 현상에 일조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어에서 피동형 표지가 영어에 비해 협소한 데서 기인하며, 이로 인

해 형태상 능동구문일 뿐 그 의미는 사실상 피동구문인 법조문이 상당수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코퍼스 분석 결과는 영어 번역문을 포함한 법률텍스트의 정형성을 보여주는 단서가 된다.

나아가 번역 교육 및 법령 번역의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본 연구의 시사점을 요약하자면, 법령 번역에서 수동태 채택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국 법령에서 행위의 주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주체가 해당 조항의 외부에 있다면 주체의 복원 또는 생략 여부를 문장 구성 및 맥락을 고려하여 태를 선택할 수 있다. 행위의 주체가 일반인이 분명하다면 주체를 생략하고 조항의 목적어를 주어로 하는 수동태를 사용할 수 있으며, 행위의 주체가 사법기관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행위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를 주어로 하는 수동태로 번역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 단, 법령 및 해당 법령의 주체가 되는 사법기관을 생략해도 착오를 일으키지 않을 경우에만 이와 같은 수동구문 전략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행위의 주체로 사법기관을 주로 취하는 형벌 동사의 경우 전체 조항의 내용을 고려하여 동사를 구체화 및 다양화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코퍼스 규모와 시간적 제약 등으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번역 법령에서 추출한 수동구문의 타입별 빈도를 분석 및 도출하지 못한 제약이 있었다. 어절 규모상 대규모 코퍼스에 기반한 연구이기는 하나 법에 따라 조문의 내용과 스타일 등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법률번역의 보편소로 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 또한 본 연구의 한계로 꼽을 수 있겠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번역법령에서 과다한 수동태 구문 번역 경향이 목표언어의 법언어 관습을 수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또한 수동태의 남발이 목표언어의 독자들에게 가독성 및 수용성 차원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의 문제는 후속연구를 통해 탐색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외국어를 사용하는 독자를 위해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한국 법령을 영어로 번역하기 시작한 지도 이미 꽤 오래이며, 번역된 법령의 양적 규모도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령 번역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미한 현실에서 한국 법언어의 특징이 실제 번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번역 결과물을 통해 분석하고 목표언어인 영어로 원래 작성된 비번역 법령에서는 어떠한 경향이 나타나는지 수동구문을 중심으로 고찰한 본 연구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법령 번역을

이해하고 그 품질을 개선하는 첫 단계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현재 법령 번역을 수행하고 있는 번역사들에게 번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무 지침을 제공하는 한편 앞으로 법령 번역을 하고자 하는 예비 번역사들을 교육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본 연구 결과는 번역문에서 수동태 구문 사용으로 인한 의미 변화와 비번역텍스트와의 차이 등에 대해 번역사들이 의식할 수 있도록 참고 자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번역 스타일이 번역 품질과도 관련 있음을 고려할 때, 개인적 차원의 전략이든 습관이든, 혹은 법령번역센터와 같은 기관의 번역 문화 또는 관행이든 지나친 수동태 사용에 대한 비판적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구명철 (2018) 「법률 언어의 가독성 향상을 위한 통사론적인 기초연구 - 법조 문서에서의 주어생략 현상을 중심으로」, 『독어학』 38: 23-46.

구명철, 정수정 (2018) 「가독성의 관점에서 본 법률 언어의 어휘론적인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독어학』 37: 1-27.

김도훈, 손수연 (2011) 「법률문서 번역에 대한 소고」, 『번역학연구』 12(3): 7-31.

김문오 (2001) 『법조문의 문장 실태 조사』, 서울: 국립국어연구원.

김문오 (2002) 『법령문의 국어학적 검토: 법무부 검토 의뢰 법령을 중심으로』, 서울: 국립국어연구원.

김병건 (2016) 「어휘적 피동의 담화 기능 연구」, 『한말연구』 42: 5-31.

김지은 (2008a) 「한불 번역에서 피동성 표현문제(1): etre-Passif, se-Passif 그리고 se-Neutre 구문으로의 불역문제」, 『한국학논집』 36: 297-348.

김지은 (2008b) 「한불 번역에서 피동성 표현문제(2): 분포적 비율을 중심으로」, 『프랑스 어문교육』 29: 347-388.

서민정 (2018) 「한국어 피동표현의 기능과 사용 양상 변화」, 『한국민족문화』 69: 3-23.

송병학 (1979) 「한국어의 수동태」, 『언어』 4(2): 87-113.

양명희 (2016) 「현행 형법의 텍스트언어학적 연구: 텍스트 구조, 유형, 문법을

중심으로」, 『텍스트언어학』 40: 113-136.

유정주 (2015a) 「한국법령 번역에서 ‘shall’의 사용에 대한 고찰: 비교 코퍼스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T&I Review』 5: 71-92.

유정주 (2015b) 「법령화행에서 ‘한다’와 ‘하여야 한다’의 번역문제: ‘shall’의 사용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6(2): 105-137.

유정주 (2017) 「법률번역 평가를 위한 텍스트일치성 측정 모델 제언」, 『통역과 번역』 19(2): 101-130.

이영옥 (2000) 「한국어와 영어의 구조의 차이에 따른 번역의 문제: 수동구문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2): 47-76.

임홍빈, 장소원 (1995) 『국어문법론 I』, 서울: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장소원 (2009) 「법률 텍스트 문장의 문법성」, 『텍스트언어학』 27: 1-29.

조인정 (2005) 「영한 번역의 문제점: 수동태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6(1): 121-142.

최규수 (2005) 「‘되다’와 ‘지다’의 피동성에 관하여」, 『한글』 269: 101-134.

최진실, 박기성 (2012) 「뉴스미디어의 수동문 영한번역 연구」, 『언어학』 64: 109-129.

Baker, Mona (1993) ‘Corpus Linguistics and Translation Studies: Implications and Applications’, in Mona Baker, Gill Francis and Elena Tognini-Bonelli (eds) *Text and Technology: In Honour of John Sinclair*.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233-250.

Biber, Douglas, Stig Johansson, Geoffrey Leech, Susan Conrad and Edward Finegan (1999) *Longman Grammar of Spoken and Written English*, Edinburgh Gate: Pearson Educational Ltd.

Biel, Łucja. (2014a) *Lost in the Eurofog: The Textual Fit of Translated Law*, Frankfurt am Main; New York: Peter Lang.

Biel, Łucja (2014b) ‘Phraseology in Legal Translation: A Corpus-Based Analysis of Textual Mapping in EU Law’ in Le Cheng, King Kui Sin and Anne Wagner (eds) *The Ashgate Handbook of Legal Translation* Abingdon: Routledge, 177-192.

Biel, Łucja (2018) ‘Lexical bundles in EU law: The Impact of Translation

- process on the Patterning of Legal Language’, in Stanislaw Goźdz-Roszkowski and Gianluca Pontrandolfo (eds) *Phraseology in Legal and Institutional Settings: A Corpus-based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 London: Routledge, 11-26.
- Biel, Łucja, Dariusz Koźbiał and Katarzyna Wasilewska (2019) ‘The formulaicity of translations across EU institutional genres: A corpus-driven analysis of lexical bundles in translated and non-translated language’, *Translation Spaces* 8(1): 67-92.
- Cao, Deborah (2014) ‘Legal Translation Studies’, in Carmen Millan and Francesca Bartrina (eds) *The Routledge Handbook of Translation Studies*, London: Routledge, 415-424.
- Cao, Deborah (2007) *Translating Law*,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 Colson, Jean-Paul (2008) ‘Cross-linguistic Phraseological Studies: An Overview’, in Sylviane Granger and Fanny Meunier (eds) *Phraseology: An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 Amsterdam & Philadelphia: John Benjamins, 191-206.
- Columbia Law School (n.d.) Writing in Plain English. Available at https://www.law.columbia.edu/sites/default/files/microsites/writing-center/files/plain_english_handout.pdf.
- Danet, Brenda (1980) ‘Language in the legal process’, *Law and Society Review* 14(3): 445 - 564.
- European Commission (2014) EU Clear English Tips for Translators. Available at https://ec.europa.eu/info/sites/info/files/clear-english-tips-translators_en.pdf.
- Giczela-Pastwa, Justyna (2019) ‘Inverse legal translation: A corpus-driven study of multi-word units related to the structure of translated statutory provisions’, in Łucja Biel, Jan Engberg, Rosario Martín Ruano and Vilelmini Sosoni (eds) *Research Methods in Legal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Crossing Methodological Boundaries*, London: Routledge, 48-65.
- Hiltunen, Risto (2012) *The Grammar and Syntax of Legal Text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Mattila, E.S. Heikki (2006) *Comparative Legal Linguistics*, Eldershot: Ashgate.
- Mellinkoff, David (1963) *The Language of the Law*, Boston: Little, Brown and Co.
- Morrison, M. Jane (1989) ‘Excursions into the nature of legal language’, *Cleveland State Law Review* 37: 271-290.
- Pontrandolfo, Gianluca (2011) ‘Phraseology in criminal judgments: a corpus study of original vs. translated Italian’, *Sendebare* 22: 209-234.
- Pontrandolfo, Gianluca (2018) ‘National and EU judicial phraseology under the magnifying glass: A corpus-assisted discourse study’, Paper delivered at the 2018 TRANSIUS Conference, University of Geneva, June 18-20, 2018.
- Šarčević, Susan (1997) *New Approach to Legal Translation*, The Hague & Boston: Kluwer Law International.
- Šarčević, Susan (2012) ‘Challenges to the Legal Translator’, in Peter Meijes Tiersma, Peter Tiersma and Lawrence Solan (eds), *The Oxford Handbook of Language and Law*,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87-199.
- Scott, Juliette R. (2012) *Legal Translation Outsourc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Tiersma, M. Peter (1999) *Legal Languag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Abstract]

**Corpus-based Research on the Linguistic Aspects of Translated Legal Texts:
With a Focus on the Passive Voice in Legal Translation**

Lee, Jieun & Choi, Hyo-eun
(Ewha Womans University)

This paper seeks to throw some light on the linguistic aspects of legal translation with a focus on the frequent use of the passive voice in Korean-English legal translation. Legal translation is a domain of specialized translation, which requires an understanding of the relevant laws and legal language, in addition to translation competence. In each jurisdiction, law has its own languages and every legal system is embedded in a specific culture and language. The passive voice is considered as one of the main features of legal language in general although it is not as common as the active voice. The passive voice may be employed in Korean to English legal translation to preserve the source language style or conform to the characteristics of legal English. Furthermore,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legal language can also affect the use of the passive voice in the translated statutes. In order to examine the use of the passive voice in translated statutes, we built corpora of Korean statutes, their English translations, and the United States Code. The three-set corpora consisted of Korean Criminal Act, Criminal Procedure Act, Civil Act, and Civil Procedure Act, the official English translations provided by the Korean Law Translation Center of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and the non-translated U.S. Code which served as a comparable corpus. The corpus analysis revealed that the frequency of the passive voice in the translations far surpassed those of the source texts, namely the Korean statutes and the U.S. federal law. The high frequency shown in the translated statutes

is mostly due to the linguistic features of Korean legal language: Inexplicit subjects due to subject ellipses in Korean statutes contributed to passive voice constructions in the translated texts.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investigate if such over-use of the passive voice is acceptable from the perspective of target language recipients and verify the regularities of translated statutes drawing on a larger scale corpus.

▶ Key Words: legal translation, statutes, passive voice, comparative corpus, parallel corpus, subject ellipsis

▶ 주제어: 법령번역, 법률, 수동태, 비교코퍼스, 병렬코퍼스, 주어 생략

이지은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jieun.lee@ewha.ac.kr

관심분야: 사법통역, 커뮤니티통역, 법률번역, 통번역교육

최효은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

cutedinojr@naver.com

관심분야: 법률번역, 특허번역, 사법통역, 번역 교육

논문투고일: 2020년 5월 5일

심사완료일: 2020년 5월 21일

게재확정일: 2020년 5월 25일